

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(고용부)

□ 과제목표

-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·제도 개선
- 임금체불, 부당해고,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

□ 주요내용

- (노동존중)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('18년)
- (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·제도 개선) '17년에 2대 지침 폐지,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, 위법·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개선
 - 고용형태 다양화 등 새롭게 제기되는 수요를 반영하고 취약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'18년부터 노사관계 법·제도 개선 추진
- (ILO 핵심협약 비준)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,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·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 추진
- (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) '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, 중소·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
- (체불·부당해고 구제)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,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선(~'18년)
- (청년 일자리 기본권)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, '18년에 직장 내 괴롭힘 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·시행

□ 기대효과

- 노동기본권 및 취약근로자 권리가 보장되고, 근로자의 생계 및 인격 침해 행태 근절